

#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풍수해보험과 나아갈 방향



홍 경 우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장

- ▶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날씨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이재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풍수해보험이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자력복구 제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 거주민의 보험가입 의무화, 풍수해보험관리기금 도입,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작성, 소상공인 시설 및 서민 동산 보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 I. 들어가는 말

자연재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여 왔다.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100년만의 폭우, 폭설, 가뭄 등이 이젠 예사말이 되어 버리는 등 그 형태와 규모가 다양화,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면서 동고서저(東高西低)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적인 특성과 도시화로 인한 인위적인 인구집중 요인 때문에 자연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으나 실제 재해에 대비하는 투자는 우려의 목소리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다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또 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대 최대에 해당하는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평균 2조7천억 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수해복구를 위해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명과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형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재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II.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풍수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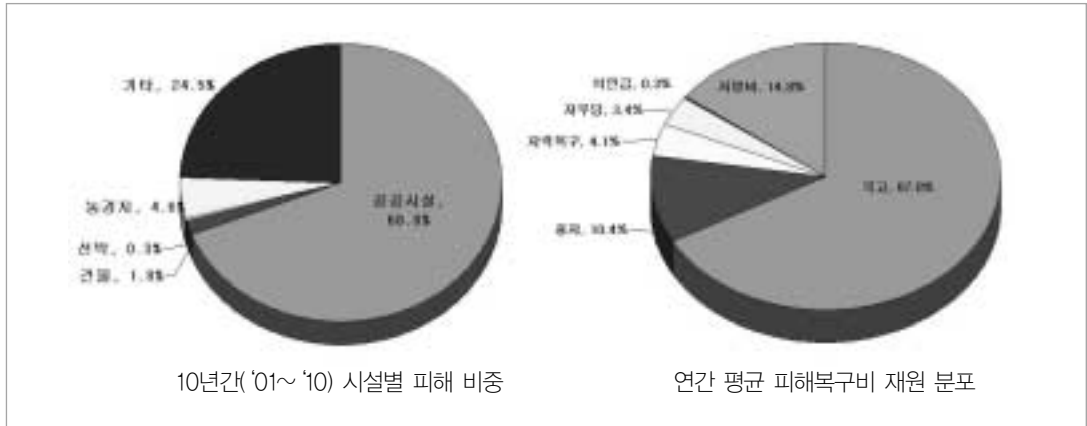
### 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국내 풍수해에 의한 연평균 피해액은 1970년대 362억원에서 최근 10년간(2001~2010) 연간평균 약 1조7천억 원으로 약 47배 증가하였으며, 그중 사유시설의 피해는 31.2%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는 연간 평균 2조7천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 재원으로는 국고가 67%로

가장 높고, 지방비 14.8%, 용자 10.4%, 자력복구 4.1%, 자부담 3.4%, 의연금 0.3% 순이다.

그림 1. 시설별 피해비중 및 복구비 재원 분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풍수해보험이다.

피해 복구비 중 공공시설을 제외한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풍수해보험과 같은 제도로 전환한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복구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풍수해보험 제도 도입·운영

영세 농어민의 생계구조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제도가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피해가 발

생하면 정부가 보상액을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변질되어 자발적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 보완정책으로 2006년도에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늘어나는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고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개인부담 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sup>1)</sup>하는 정책보험<sup>2)</sup>이므로 개인은 적은 비용으로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은 위험을 인지하는 많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적립하고 위험이 국한된 지역에서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출하는 보험금이 전체 보험적립액의 규모보다 작을 때 이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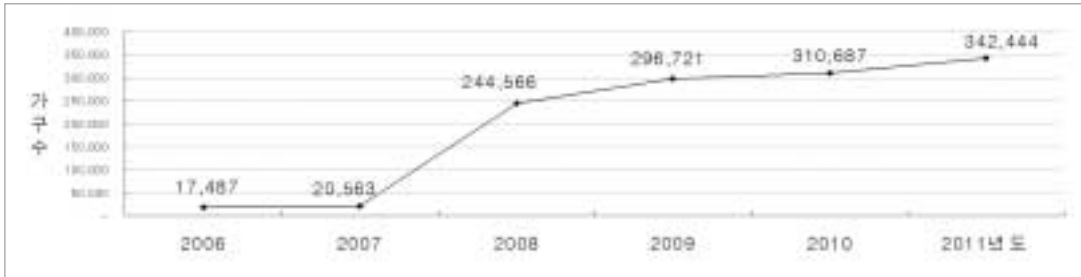
1) 정부지원 보험료 : 일반 55~62%,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 76%

2) 정책보험 : 정부에서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 보상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로 도입·운영하는 보험

방재정보광장

**정책정보**

그림 2. 연도별 보험가입 추이



그러나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 일지라도 주거지역의 고저, 주거 형태, 수해에 대한 과거 경험 등에 따라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만 가입하고 위험이 적은 사람은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피해 발생 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일반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충족요건을 만족하기가 어렵고,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sup>3)</sup>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보험자가 수해발생 이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및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통상적 위험을 초과하는 거대 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의 생존권과 사회구호 보상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회적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매년 소비자 요구 수준을 정책에 반영하여 끊임없이 상품을 개선하여 지금은 최저생활수준 이상, 즉 구호차원을 넘어 피해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민간보험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꾸준한 홍보와 가입안내 노력으로 도입 초기

가입자가 1만7천 가구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1년에는 34만 가구를 넘어섰다.

### Ⅲ. 풍수해보험, 풍수재 대비 명품으로 도약

#### 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변신

2011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SIS리서치앤컨설팅)결과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은 매우 크게 인식(97.3%)하고 있고, 재가입 의향 비율(82.8%)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보상하는 금액이 낮아 보험금을 향상시켜달라는 개선 요구(47.2%)가 많았다.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금액의 기준단가는 1990년대에 조사하여 마련된 복구비 지원기준 단가 60만원/㎡을 준용한 것으로 현실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보험가족에게 현실화된 보험금으로 생활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가입단가를 1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경기도 이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1년에 4만5천6백 원(90%보상형)의 보험료를 한번 납입하고 주택(100㎡)이 자연재해로 모두 파손되었다면 무상복

3) 대수의 법칙 : 표본의 관측대상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 추정의 정밀도가 향상, 즉 수가 커질수록 일어나는 확률에 근접

구비 지원금의 10배인 9천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그 밖에 가입실적이 저조하고 실손보상과는 거리가 먼 50%보상형 상품은 판매를 중단하였고, 침수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수준보다 낮았던 동산 침수보험금을 1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0배 높였으며, 침수피해 우려가 적은 주택

침수보험료 부담 분은 자유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 손해율을 상품에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개인부담은 낮아지고 보상금은 높아지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주민들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2.4.2부터 달라지는 제도】

| 구분              | '11년 상품             | '12년 상품  |
|-----------------|---------------------|--|
| 침수보험금 부보장특약 신설  | -                   | 침수보험금 부보장 자유선택특약 신설 (개별가입 시만 가능)                               |
| 주택동산 침수 보험금 현실화 | 12(24)만원~16(32)만원   | 120만원  |
| 주택 50%보상형 판매 중지 | 50%, 70%, 90%형      | 70%, 90%형  |
| 주택 보상금액 확대      | 60만원/m <sup>2</sup> | 단독주택 100만원/m <sup>2</sup><br>공동주택 90만원/m <sup>2</sup>          |
| 보험요율 인하         | -                   | 단독주택 : 평균 22.6% ↓<br>온실 : 평균 12.5% ↓<br>※ 지자체별 요율조정(인상·하)폭이 다름 |
| 손해조사비용 변경       | 위험보험료의 6.9%         | 위험보험료의 7.4%  |

#### 나. 자연재해 피해 자력복구 총당 비중 증가

자연재해 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풍수해보험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sup>4)</sup>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11.12월 기준) 발생한 보험사고는 2,296건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64억원이고, '11년 보험금 지급액(3,159백만원)이 '06~'10년 지급보험금 합계(3,255백만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갈수록 피해강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년 중 보험금 지급이 7~10월에 집중(65.3%) 되고 있는데, 이를 손해사정·평가기간 등을 감안할 때 풍수해보험 사고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사계절 중 봄철에 미리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피해에 스스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 가장 자연재해 피해가 컸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대형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 풍수해보험이 다른 정책에 비해 다소 적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상 기온현상이 일상화 되고 대형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홍보물과 직접 정보를 수집'하여 가입했다는 응답률이 61%에 달하고 있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데 홍보

방재정보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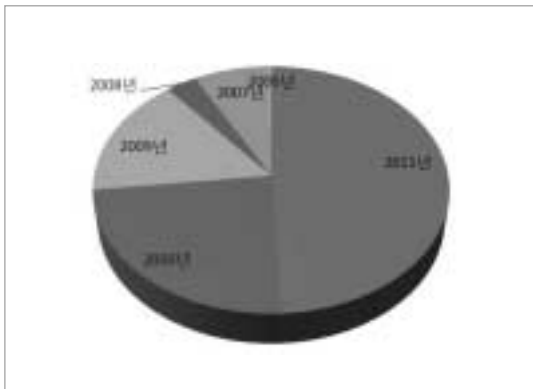
4) 재난지원금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 주택 및 농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정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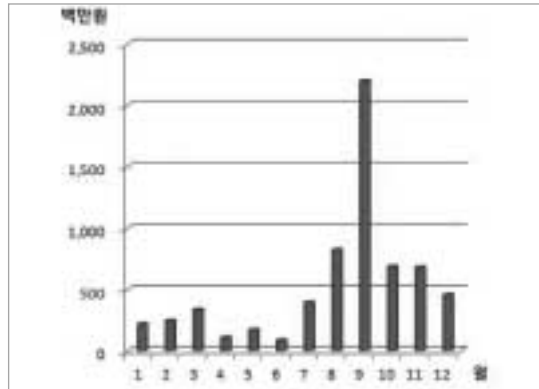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

| 연도별 | 계     |           | 주택    |           | 온실  |           | 축사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총계  | 2,296 | 6,414,599 | 1,425 | 3,007,268 | 863 | 3,252,444 | 8  | 154,887 |
| 11년 | 1,055 | 3,159,240 | 641   | 1,115,688 | 414 | 2,043,552 | -  | -       |
| 10년 | 628   | 1,534,086 | 430   | 766,110   | 195 | 645,628   | 3  | 122,348 |
| 09년 | 442   | 1,018,133 | 287   | 788,681   | 153 | 208,026   | 2  | 21,426  |
| 08년 | 67    | 198,299   | 29    | 101,734   | 38  | 96,565    | -  | -       |
| 07년 | 100   | 480,941   | 35    | 211,354   | 62  | 258,474   | 3  | 11,113  |
| 06년 | 4     | 23,900    | 3     | 23,700    | 1   | 200       | -  | -       |

그림 3. 연도별 보험금 지급비율 및 월별 보험금 누계



연도별 지급보험금 비율



월별 지급 보험금 누계

가 효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책의 효용성을 알리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의 이행이 수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풍수해보험이 활성화 된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무조건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결하고 실 복구비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V. 전국 시행 5년차, 풍수해보험의 발전 방향

##### 가. 재난관리 사각지대 거주민에 대한 보험 가입 정례화

미국에서는 국가홍수보험계획 참여지역 중 특별 홍수위험지역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조립식 주택 그리고 신축예정인 건물에 대해 지원금이나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홍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홍수지역에서 대출 의무가입의 판

단에 대한 결정은 대출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홍수위험 지역 거주민이 자연재해로 소유주택 손실피해를 입는 경우 복구도 못한 채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금융권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약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선정하여 「자연재해대책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다. 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재해예방 사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정비·개선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현재 1,53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유형별로는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이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

| 지구유형     | 위험내역   |
|----------|--|
| 침수위험지구   | •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 발생으로 인명 및 건축물 등의 피해유발 지구  |
| 유실위험지구   |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제방유실로 주택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                      |
| 고립위험지구   |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
| 붕괴위험지구   |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br>• 자연적으로 형성된 급경사지로 풍화작용, 지하수 용출,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 취약방재시설지구 | •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br>•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 해일위험지구   | • 지진해일, 폭풍해일, 너울성파도, 월파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태풍·홍수·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파손 및 침수의 우려가 매우 높아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경우 생계구호차원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자력복구에 한계가 있다.

일상화된 기후변화로 매년 기록적인 자연재해를 갱신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재해위험지구 내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은 거주민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파손이라는 큰 피해를 입

게 된다면, 해당 주민은 피해복구는 커녕 금융권 부채로 인하여 자칫 급빈(急貧) 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금융권에서는 담보권 소실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내의 거주민에게 주택자금이나 정책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력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권의 담보권 확보는 물론, 취약지역 거주민의 재



**정책정보**

산을 보전하면서 재활의 토대가 되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임의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제도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범국민적 개보험(皆保險)<sup>5)</sup>으로 정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일시에 중단할 경우, 재해위험 관리 책임을 정부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주민의 반감을 촉발시킬 우려도 있다.

그 밖에 보험을 통한 사유재산의 위험관리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설마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 하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상복구비를 받으면 된다는 주민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재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간보험만의 성격을 가질 수도 없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민간과 사회보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는 재해예방 및 경감에 대한 의무 이행을 수행해야 하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 주민과 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은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의식을 갖고 본인의 시설물 외에 전체적인 피해경감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의무보험으로 도입될 경우, 보험제도의 기본원리인 위험의 결합과 분산을 전국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험서비스 공급을 위한 일정 수준의 수요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화재보험 가입은 임의지만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는 의무적으로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조건부 의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프랑스는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보험(가정종합보험, 자동차보험)에서도 자연재해특약가입이 의무이다.

자연재해 위험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전체 및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전체가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논리가 인정된다.

거대 재해가 발생한 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무보험을 시작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할 것 인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풍수해보험기금 설치**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자연재해 위험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므로 상호 독립성이 낮아 대수의 법칙에 의한 객관적인 사고발생 확률 추정이 어렵다.

자연재해는 그 특성상 거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충분한 담보력 및 재보험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나, 대다수의 민영보험회사는

5) 개보험 : 국민 모두가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

위험담보 자금력에 한계가 있고, 재보험 수용능력(Capacity)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은 동시에 대규모 피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므로 손해사정을 하는데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며, 재보험처리에 있어서도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전적으로 민영보험시장에 위임할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분산체계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국가개입에 의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보험료 보조를 통하여 운영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있어 정책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논리에 의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최종 재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 민영보험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담보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 효율적인 위험분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자연재해 위험을 담보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거대재해 위험을 담보하는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풍수해보험은 결산결과 위험보험료에서 발생한 잉여금 전액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미래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보전준비금 제도는 다른 손해보험상품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순 손해를 100% 미만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영업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를 전부 손실보전준비금(부채)으로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영보험사 특성과 배치(背馳)되어 풍수해보험 사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만을 보전 받을 수 있어, 보험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위험인수 및 위험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위험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있으며,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2010년 말 적립된 금액은 21억여 원에 불과하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거대 재해로 인한 손해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거대 재해 발생으로 인한 국고 지원 시 추경예산의 편성 등이 원활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보험 재정 안정화의 일환으로 현행 풍수해보험의 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범정부적 자연재해보험(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통합기금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액을 기금으로 확정하여, 안정적인 위험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거대 보험금을 탄력적으로 조성해 둘 수 있고, 사전에 적립해둔 지급재원이 없더라도 책임액을 우선 신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사고의 빈도와 심도에 있어서, 미래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여부와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고 사회보장 및 보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유재원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국가재보험기금의 설치의 재해지원 예산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안정화 되어 체계적인 자연재해대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민영시장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재보험 공급기



**정책정보**

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풍수해보험 운영체계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현재의 풍수해보험 요율체계는 등급요율(class rate)로 분류되는데, 전국 230개 시·군·구를 각각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구분하여 동일등급 내에서는 보험목적물(주택, 온실)의 위치, 구조 등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보험목적물이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

되는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30개 시군구별 과거의 행정통계 및 보험경험 통계만을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함에 따라 시군구 간의 보험요율 편차가 발생하고, 단위지역 내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요율(Flat Rate)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기피현상이 우려되며, 상습침수구역에 위치한 주택과 고지대에 위치한 주택의 보험료가 동일해 보험요율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작성이다.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되는 풍수해위험 정도는 국민들의

**【국의 보험관리지도 운영 사례】**

| 구분            | 미 국   | 체 코  | 스 위 스   |
|---------------|---|--|---|
| 명칭            | • 홍수보험료율지도(FIRM: Flood Insurance Rate Map)  | • FRAT(Flood Risk Assessment Tool)         | • CatNet(Catastrophe Network)   |
| 제작            | • 미국재난관리청(FEMA)   | • 스위스리, MMC <sup>1)</sup>                  | • 스위스리  |
| 지도 제공         | • FEMA 홈페이지에서 열람<br>• 종이, CD, 웹서비스 형태로 제공   | • CD, DVD(C/S 환경)로 제공                      | • Swiss Re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후 지도열람   |
| 주요 내용         | • 특별홍수위험지역(100년 빈도 기준 14단계로 구분)<br>• 홍수위에 의한 범람가능 지역(100년, 500년)<br>• 홍수소통을 위한 홍수로<br>• 제방 미설치 구간 | • 홍수위험지역 (발생빈도에 따라 6단계 구분)<br>• 최대 침수흔적 표시 | • 홍수위험지역(10개국 국가별 구분)<br>• 전세계 지진위험, 진원지, 화산분포 현황<br>• 풍속(열대저기압, 유럽 윈터 스톰, 미국 토네이도)<br>• 전세계 열대저기압 경로, 미국의 해일 |
| 보험료율 산정시 고려사항 | • 100년빈도 홍수위<br>• 목적물 취약성<br>- 주택, 상업용 건물 등<br>- 건물유형, 지하실 유무 등<br>• 지역공동체 요율산출 시스템 <sup>2)</sup> | • 홍수위<br>• 목적물 취약성                         | • 홍수위   |
| 활용            | • 위험평가, 요율 결정 등<br>• 홍수위험지구 관리<br>• 토지계획 등  | • 보험가입시 활용<br>- 위험평가, 요율 결정 등              | • 보험사의 재보험 가입 시 활용<br>- 위험평가, 요율 결정 등   |

1) MMC(MultiMedia Computer) : 체코의 지리정보시스템 기술제공업체

2) 지역공동체 요율산출시스템 : 홍수보험제도의 최소요건 이상의 홍수위험지구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한 지역공동체에 대해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풍수해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풍수해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요율은 역선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방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피해 이력과 향후 발생 위험 등 지역별 위험 정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보험요율을 제공하는 풍수해보험 관리지도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풍수해보험관리지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위험관리능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국토개발과 이용의 진작, 부동산관련 조세, 정부의 각종 보조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낮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의욕을 높여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유도하고, 각종 금융거래 시 담보평가 및 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 목적물의 위험도 평가 및 보험요율 적용은 물론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물손해보험의 언더라이팅에도 널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보험은 그 특성상 보험요율을 통한 위험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가 작성되면 정책보험을 통해 얻어지는 위기관리기법이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고, 방재대책, 피해이력 등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도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자에게 자율적 방재대책 기반 조성을 유도할 수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경험 모델을 활용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고 지역별 위험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건축행위와 보험제도의 결합 운영을 통해 재해에 강한 도시건설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 풍수해보험 대상에 소상공인 시설까지 확대

소상공인은 개별단위로는 대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만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집합단위로는 사업체수와 고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 전체 사업체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5%를 차지하고, 고용인 수 기준으로는 38.9%, 500만 명을 초과하고 있어 경제·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실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주역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소상공인은 매우 취약한 경영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관리 대비책도 미흡한 상황이어서 최근 풍수해로 연평균 4,304개소, 1,07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은 물론 그 존립기반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주택 침수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원하

방재정보광장

【소상공인 시설 피해현황】

(단위 : 개, 억원/ 출처 : 중소기업청)

| 구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합계     | 평균    |
|----------|-------|--------|------|-------|-------|-------|------|------|-------|-------|--------|-------|
| 피해업체수    | 9,055 | 15,493 | 517  | 2,039 | 1,745 | 3,064 | 43   | 184  | 3,608 | 7,297 | 43,045 | 4,304 |
| 피해액      | 3,055 | 3,371  | 126  | 1,144 | 335   | 745   | 17   | 127  | 989   | 835   | 10,744 | 1,074 |
| 업체당평균피해액 | 0.34  | 0.22   | 0.24 | 0.56  | 0.19  | 0.24  | 0.40 | 0.69 | 0.27  | 0.11  | 0.25   | 0.25  |

**정책정보**

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서 기금 100만원과 용자만으로는 자력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손 보상을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 체결과 농어업 기업화,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실손 보상을 위한 정책보험제도의 도입은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중소기업을 농어업 물건과 같이 보호, 육성토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본력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제도화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자연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동산보험 상품 개혁**

상시 근로자가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인 서민경제 사업장의 소유형태를 분석하면 보증부 월세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소유(29.3%), 월세(22.7%), 전세(8.0%) 순으로 나타나 과반 수 이상이 자가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서비스업(87.5%)과 제조업(9.7%)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92% 이상이 독립점(단독사업체) 형태로 주로 소유가 아닌 세입자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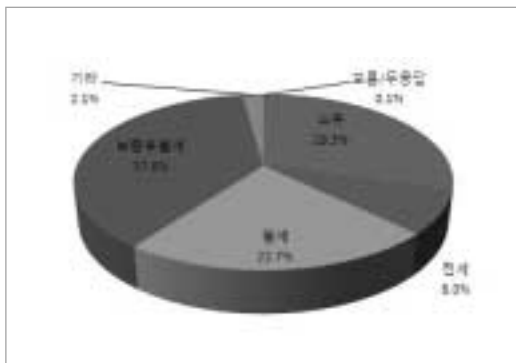
이들에 대한 2009~2010년 자연재해 목적물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기계설비의 피해비중이 36.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완제품(36.1%), 원자재(19.9%), 건축물(7.5%)의 순이다.

이처럼 동산(완제품 및 원자재)의 피해비중이 56%로, 건축물(7.5%)의 피해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서민경제 주체들의 대부분이 세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사유시설 지원 정책이 시설물 중심으로 치우쳐 서민경제인은 자연재해 정책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민경제인들은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자력으로 재화에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자본기반이 취약한 서민경제의 대량파산과 실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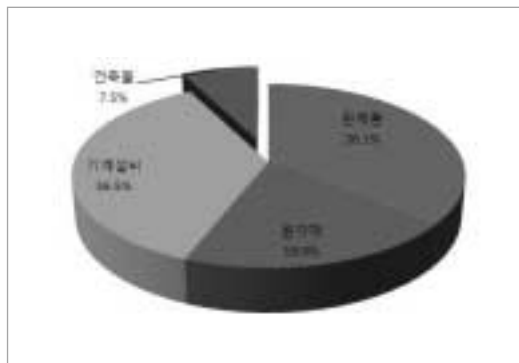
자연재해 리스크 대비가 부족한 세입자 형태의 서민경제 주체들도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우리나라의 한 경제 축을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정

그림 4. 서민경제 사업장 소유형태별 비중



출처 : 2011.1월 보험개발원

그림 5. 2009~2010년 서민경제의 자연재해 목적물별 피해비중



출처 : 중소기업청

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동산보험을 도입하면 자기책임 실현과 경영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V. 마무리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나 국민성금 및 각종 지원금 등에 의존하는 등 보험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안전망을 선진국처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보험제도가 하루속히 확대시행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영보험사의 역할분담과 공생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가 모든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처럼 민영보험사가 위험을 보유하지 않고 대행사업자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정부, 보험사, 가입자 모두가 Win-Win 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성 보험의 형태로 보험료의 일부 보조와 통상적 위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재보험으로 담보하고, 민영보험사는 위험의 일부만 보유하면서 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자연재해보험제도는 오래전에 만들어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발전되어 왔고, 보험상품과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충

분히 검토하고 우리가 겪었던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 보험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자연재해 양상이 국민 스스로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효과적인 자력복구를 위한 대비책까지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모든 재해관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풍수해보험은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전국민 재해관리 참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 또는 상품이라도 수요자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풍수해보험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때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풍수해보험 역시 정책보험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1.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도입방안 연구(2011. 보험개발원)
2. 재해연보(소방방재청)
3.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정책 과제(2007. 신동호)



정책정보

## 농어업재해보험

### ■ 사업개요

- 목 적 : 재해로 인한 농어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농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 운영비의 일부 지원
- '12예산 : 1,567억원(농작물 1,140, 가축 357, 양식수산물 70)
- \* 지원률 : 농작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보험(보험료 50%, 운영비 100%) / 가축보험(영업보험료(보험료+운영비)의 50%)
- 사업기간 : '01년(가축은 '97년, 양식수산물은 '08) ~ 계속
- '12년도 사업규모 : 62품목(농작물 35, 가축 16, 양식수산물 11)
- '11년 가입률 : 농작물 40.0%, 가축 55.2, 양식수산물 32.9
- \* 가입률 : 대상면적(가입대상두수) 대비 가입면적(가입두수)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LIG 컨소시엄

### ■ 추진계획

- '13년까지 농작물 40, 가축 16, 양식수산물 15 품목으로 보험대상 확대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보험홍보 강화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12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 농작물(35개) : 사과 · 배 · 포도 · 복숭아 · 감귤 · 단감 · 뽕은감 · 밤 · 참다래 · 자두 · 감자 · 콩 · 고추 · 양파 · 수박 · 버 · 고구마 · 옥수수 · 미늘 · 매실 · 시설딸기 · 시설참외 · 시설토마토 · 시설오이 · 대추 · 시설풋고추 · 시설호박 · 시설국화 · 시설장미 · 복분자 · 인삼 · 오디 · 시설멜론 · 시설파프리카 · 녹차
- 가 축(16개) : 소 · 말 · 돼지 · 닭 · 오리 · 꿩 · 메추리 · 칠면조 · 타조 · 거위 · 사슴 · 양 · 벌 · 토끼 · 관상조 · 오소리
- 양식수산물(11개) : 넙치 · 전복 · 조피볼락 · 굴 · 김 · 참돔 · 감성돔 · 돌돔 · 쥐치 · 농어 · 기타볼락

**참고 1**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별 사업지역

2012.08.31, 현재

| 구분                   | 품목             | 사업지역   |   |
|----------------------|----------------|--|---|
| 농작물재해보험<br>(35개품목)   | 본사업<br>(16품목)  | 사과,배,감귤,단감,<br>뽕은감,자두,콩,양파,<br>감자,밤,벼,고구마,<br>옥수수,마늘,매실              | 전국  |
|                      |                | 참다래  | 전남, 경남, 제주, 광주, 부산, 울산  |
|                      | 시범사업<br>(19품목) | 복숭아, 포도  | 전국  |
|                      |                | 고추   | 괴산, 해남, 안동, 영양, 제천, 고창, 정읍, 영광  |
|                      |                | 대추   | 보은, 경산, 밀양, 군위, 청도  |
|                      |                | 복분자  | 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
|                      |                | 시설하우스 시설작물<br>(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br>참외, 호박, 풋고추, 장미,<br>국화, 파프리카, 멜론) | 춘천, 홍천, 철원, 평창(강원), 고양, 평택, 파주, 광주, 포천,<br>이천(경기), 청원, 진천(충북)부여, 공주, 논산, 당진, 태안, 예산,<br>천안(충남), 전주, 완주, 고창(전북), 담양, 순천, 나주, 영암, 곡성,<br>광양, 보성, 화순(전남), 성주, 예천, 상주, 고령, 군위, 김천, 안동,<br>칠곡(경북), 밀양, 진주, 김해, 함안, 의령, 창원, 산청, 창녕, 하동,<br>합천(경남), 강서(부산)광산, 남구(광주) |
|                      |                | 인삼   | 홍천, 금산, 고창  |
|                      |                | 오디   | 부안  |
|                      |                | 녹차   | 하동, 보성  |
| 가축재해보험<br>(16개품목)    | 본사업<br>(14품목)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br>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br>타조, 양(염소), 벌, 토끼         | 전국  |
|                      | 시범사업<br>(2품목)  | 관상조, 오소리   | 전국  |
| 양식수산물재해<br>보험(11개품목) | 본사업<br>(1품목)   | 넙치   | 전국  |
|                      | 시범사업<br>(10품목) | 전복   | 완도·진도·해남·강진(5권역), 신안(4권역), 여수,<br>고흥(6권역), 태안(2권역)  |
|                      |                | 어류(조피볼락,<br>감성돔, 참돔, 돌돔,<br>농어, 쥐치, 기타볼락)                            | 서산, 보령, 서천, 태안, 홍성(2권역)<br>순천·여수·광양·장흥·보성·고흥(6권역)<br>사천·통영·하동·남해·고성(7권역)  |
|                      |                | 굴  | 여수(6권역), 통영, 고성(7권역)  |
|                      | 김              | 해남(5권역)  |   |

방재정보광장



**정책정보**

**참고 2 농어업재해보험 운영현황**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 개, 백만원, 호, %, ha)

| 구분             |            | '01         | '03                      | '05       | '07                                | '09   | '10                             | '11                               |
|----------------|------------|-------------|--------------------------|-----------|------------------------------------|---|---------------------------------|-----------------------------------|
| 보험품목(개)        |            | 2<br>(사과·배) | 6<br>(사과·배·포도·복숭아·단감·감귤) | 6<br>(좌동) | 10<br>(뽕은감('06), 밤·참다래·자두('07) 추가) | 20<br>(감자·콩·양파·고추·수박('08), 버·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09) 추가) | 25<br>(딸기·토마토·오이·참외(시설), 대추 추가) | 30<br>(꽃고추,호박, 국화,장미(시설), 복분자 추가) |
| 대상재해           |            | 태풍·우박·동상해   | 태풍·우박·동상해·호우·나무피해        | 좌동        | 좌동<br>('07년 이후 추가 품목은 전위험)         | 좌동  | 좌동                              | 좌동                                |
| 집행액(백만원)       |            | 2,337       | 16,224                   | 65,371    | 50,783                             | 54,752  | 67,732                          | 91,547                            |
| 국고지원율(%)       | 보험료        | 30          | 50                       | 61.3      | 55.6                               | 50  | 50                              | 50                                |
|                | 운영비        | 50          | 8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국고지원율      | 42          | 59                       | 70        | 68                                 | 63  | 60                              | 62.0                              |
| 보험가입실적         | 가입농가수(호)   | 8,055       | 16,481                   | 26,335    | 29,174                             | 45,884  | 47,745                          | 67,654                            |
|                | 가입면적(ha)   | 4,096       | 11,001                   | 20,301    | 23,661                             | 48,381  | 51,550                          | 86,604                            |
|                | 가입률(%)     | 17.5        | 15.2                     | 23.4      | 26.5                               | 31.4  | 36.0                            | 40.2                              |
| 보험료 및 운영비(백만원) | 순보험료(A)    | 3,016       | 17,202                   | 54,847    | 55,670                             | 64,268  | 86,357                          | 115,410                           |
|                | 운영비(B)     | 2,556       | 10,438                   | 15,769    | 18,922                             | 22,602  | 26,660                          | 32,298                            |
|                | 영업보험료(A+B) | 5,572       | 27,640                   | 70,616    | 74,592                             | 86,870  | 113,017                         | 147,708                           |
| 보험금지급실적        | 지급농가(호)    | 407         | 10,134                   | 5,877     | 7,214                              | 8,734   | 13,851                          | 28,311                            |
|                | 지급액(C)     | 1,319       | 50,018                   | 23,871    | 61,464                             | 66,252  | 90,330                          | 13,263                            |
|                | 손해율(C/A,%) | 43.7        | 290.8                    | 43.5      | 110.4                              | 103.1   | 104.6                           | 119.4                             |
| 보험요율(%)        |            | 3.68        | 5.81                     | 9.25      | 6.58                               | 5.54  | 5.74                            | 6.33                              |

■ 가축재해보험

(단위 : 천두, 백만원)

| 구분              | '97             | '01              | '03                | '05                  | '07                      | '09                            | '10                                | '11                                     |
|-----------------|-----------------|------------------|--------------------|----------------------|--------------------------|--------------------------------|------------------------------------|---|
| 대상가축            | 1<br>(소)        | 3<br>(소, 말, 돼지)  | 4<br>(소, 말, 돼지, 닭) | 7<br>(소, 말, 돼지, 가금*) | 11<br>(소, 말, 돼지, 가금, 사슴) | 13<br>(소, 말, 돼지, 가금, 사슴, 양, 벌) | 14<br>(소, 말, 돼지, 가금, 사슴, 양, 벌, 토끼) | 15<br>(소, 말, 돼지, 가금,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
| 가입두수            | 35천두            | 2,317            | 21,375             | 45,845               | 57,535                   | 63,393                         | 80,479                             | 95,950                                  |
| 수입 보험료<br>(보조금) | 813백만원<br>(500) | 9,096<br>(4,717) | 23,264<br>(11,516) | 31,044<br>(15,020)   | 47,258<br>(22,892)       | 60,000<br>(29,723)             | 65,486<br>(31,675)                 | 79,542<br>(39,417)                      |
| 지급 건수           | 355건            | 3,421            | 12,807             | 9,101                | 15,096                   | 20,007                         | 17,165                             | 13,121                                  |
| 보험금 보험금         | 319백만원          | 4,163            | 20,957             | 18,460               | 36,293                   | 44,333                         | 48,116                             | 48,082                                  |

\* 가금 : ('03)닭, ('04)오리, ('05)꿩, 메추리, ('06)칠면조, ('07)거위, 타조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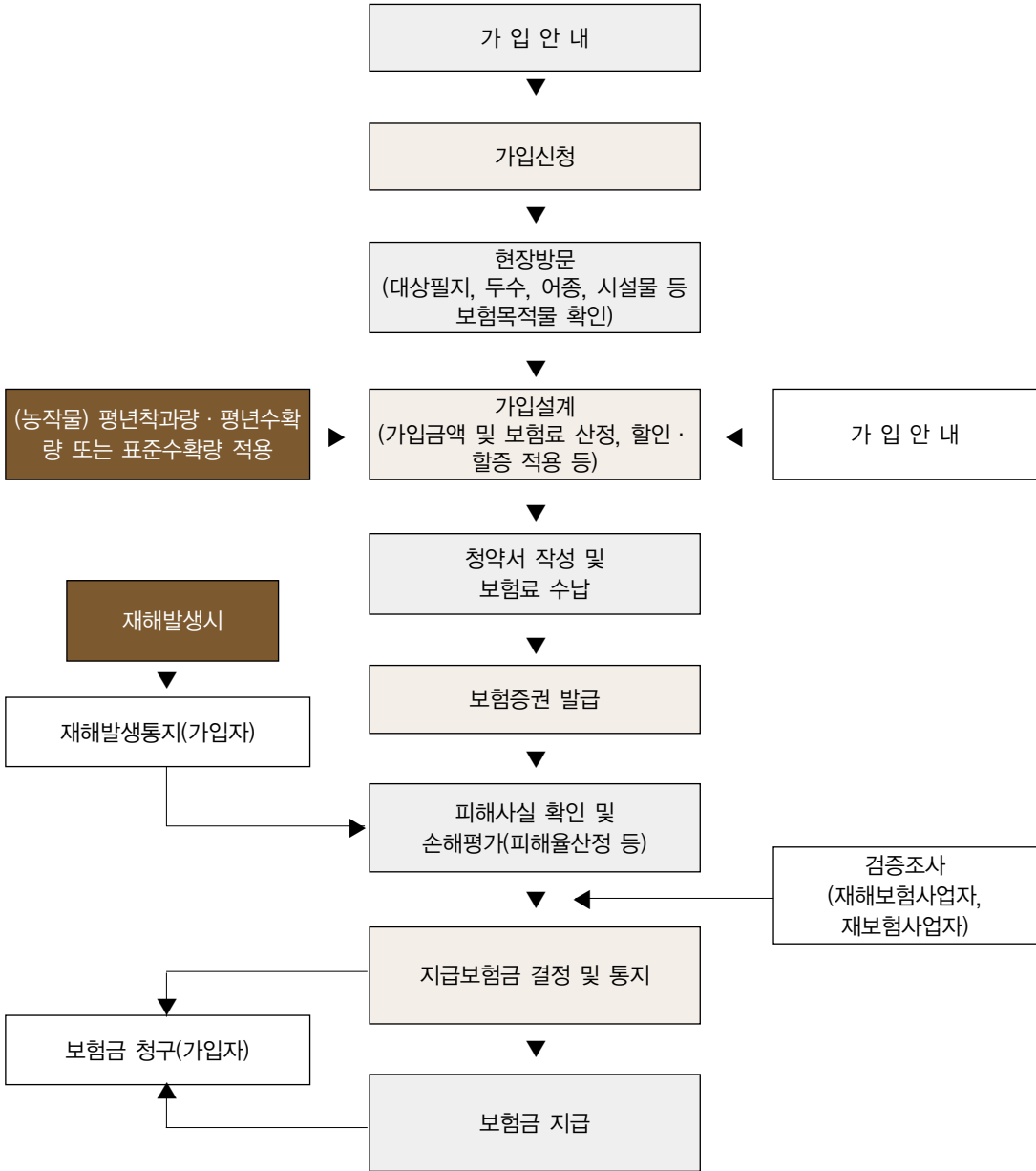
(단위 : 개, %, 호, 백만원)

| 구분               |                    | '08         | '09    | '10            | '11                                    |
|------------------|--------------------|-------------|--------|----------------|--|
| 보험품목(개)          |                    | 1(넙치)       | 1(넙치)  | 2(넙치, 전복)      | 5(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
| 대상재해             |                    | 태풍·폭풍·해일·적조 | 좌동     | 태풍·강풍·해일·풍랑·적조 | 태풍(강풍)·해일·풍랑·적조·호우·홍수·대설·동해·이상조류(굴, 김) |
| 국고<br>지원율<br>(%) | 보험료                | 50          | 50     | 50             | 50                                     |
|                  | 운영비                | 70          | 70     | 80             | 100                                    |
|                  | 국고지원율              | 59          | 59     | 63.5           | 72.5                                   |
| 보험가입<br>실적       | 가입어가수(호)           | 34          | 88     | 181            | 396                                    |
|                  | 가입율(%)             | 5.3         | 13.8   | 6.9            | 8.2                                    |
|                  | 가입금액<br>(주계약, 백만원) | 13,500      | 45,350 | 81,740         | 149,109                                |
| 보험금<br>지급실적      | 지급어가(호)            | 0           | 1      | 8              | 81                                     |
|                  | 지급액(C)             | 0           | 32     | 252            | 2,736                                  |
|                  | 손해율(C/A,%)         | 0           | 6.9    | 31.7           | 189.3                                  |

방재정보광장

**정책 정보**

**참고 3** 농어업재해보험 사업 추진절차



#### 참고 4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범위

##### ■ 농작물 (35개 품목)

###### 〈종합위험보장〉

- 대상품목 : 복숭아, 포도,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30개 품목
- 보장재해 : 태풍, 강풍, 우박, 호우, 동상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기타 자연재해

\* 병충해 : 벼만 해당(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 〈특정위험보장〉

-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 등 5개 품목
- 보장재해  
(기본) 태풍, 강풍, 우박  
(특약)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장

##### ■ 가축 (16개 품목)

- 대상품목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 보장재해 : (기본) 화재·자연재해(폭염포함)\* 소(질병·부상·도난 추가), 말(질병·부상·난산·불임 추가) (특약) 축사위험·전기위험(사슴,양,벌,토끼,오소리 제외)·폭염(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질병(돼지,사슴,양)·축사휴지(돼지)·운송위험·번식장애(말)·부상(사슴,양)

##### ■ 양식수산물 (11개 품목)

- 대상품목 : 넙치, 전복,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굴, 김
- 보장재해 : (기본) 태풍, 강풍, 해일, 호우, 대설, 동해, 적조(김 제외), 낙뢰(넙치만 해당), 자연재해로 인한 폐혈증 등 세균성 등 질병(김만 해당)  
(특약) 시설물 특약(태풍·강풍·해일·호우·홍수·대설 보장, 굴은 이상조류 추가, 김은 동해 및 이상조류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폐혈증 등 세균성 등 질병특약(김, 굴 제외한 나머지 품목)

**정책정보**

**참고 5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판매처**

■ **(판매 상품수)** '12년도 농어업재해보험상품은 총 65개이며, 상반기(1~6월)에는 39개 상품(전년동기 33개 대비 6개 증가, 18.2%)을 판매

- 상품 내역(65) : 농작물 35, 가축 16, 양식수산물 11, 농어업인 3

| 구분     | 계      | 본사업    |  | 시범사업   |  |
|--------|--------|--------|--|--------|--|
| 계      | 65(39) | 33(27) |  | 32(12) |  |
| 농작물    | 35(12) | 16(10) |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 참다래, 밤, 버, 고구마, 옥수수, 마늘, 자두, 콩, 양파, 감자, 매실 | 19(2)  | 복숭아, 포도, 고추, 대추, 시설수박, 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꽃고추, 시설장미, 시설국화, 시설멜론, 시설파프리카, 복분자, 인삼, 오디, 녹차 |
| 가축     | 16(15) | 14(14)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염소), 벌, 토끼         | 2(1)   | 관상조, 오소리   |
| 양식수산물  | 11(9)  | 1(1)   | 넙치   | 10(8)  | 전복, 조피볼락, 감성돔, 참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굴, 김, 농어  |
| 농(임)업인 | 3(3)   | 2(2)   | 농(임)업인, 농기계  | 1(1)   | 농작업근로자   |

\* ( )는 상반기 판매상품수, 판매상품은 진하게 표시, 신규판매 6개(감성돔, 참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농어)

■ **(판매시기)** 농작물은 보험기간(밭아기·파종기~수확기)을 감안, 품목별로 생육특성에 따라 판매시기를 달리 적용, 나머지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인 상품은 일부(굴, 김)를 제외하고 연중 판매

\* (주요 농작물 판매기간) 사과·배·단감·뽕은감·감귤(3~4월), 밤(4월), 버·고구마·옥수수·참다래(5~6월)

\* 굴, 김은 양성기간(평균 6개월)을 보험기간으로 하므로 해당시점에 판매 : 6~10월

■ **(판매처)** 재해보험별로 보험사업자와 보험대리점(지역·품목 농협, 수협 등)간 약정에 의한 위탁판매 (위탁계약 지역·품목 농협 924개→1,166개 중 79.3%, 지역 수협 33개→92개 중 35.9%)

| 보험사업자       | 보험별 | 농작물 | 가축 | 양식수산물 | 농어업인  |     |        |
|-------------|-----|-----|----|-------|-------|-----|--------|
|             |     |     |    |       | 농·임업인 | 농기계 | 농작업근로자 |
| 농협손해보험      |     | ◆   | ◆  |       |       | ◆   |        |
| 농협생명보험      |     |     |    |       | ◆     |     |        |
| 수협          |     |     |    | ◆     |       |     |        |
| LIG 컨소시엄    |     |     |    |       |       |     |        |
| (LIG·현대·동부) |     |     | ◆  |       |       |     |        |

## 참고 6 농어업재해보험금 지급기준

### ■ 지급 보험금 산정

- 보험대상 품목별 가입유형에 따라 가입금액 범위내 자부담을 제외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

| 보험별   | 보장유형 | 재해피해 손해액 대비 보장 수준   |
|-------|------|---|
| 농작물   |      | • 사과·배·단감·뽕은감·감귤(70%, 80%, 85%), 복숭아·포도·벼(70%, 80%), 밤·참다래 등 나머지(70%), 고추(자기부담금 30만원), 시설작물(자기부담금 10만원), 시설물(30만원 또는 가입금액 10% 중 작은금액) |
| 가축    |      | • 소·말·사슴·양(80%, * 단 말 경주마는 70%), 돼지 및 닭·오리 등 가금류 등(95%)<br>* 폭염 특약상품은 자부담 정액을 적용(건당 적용, 돼지 300만원, 가금류 100만원)                          |
| 양식수산물 |      | • 넙치·전복(70%, 75%, 80%, 85%, 90%), 굴(70%, 75%, 80%), 김(70%)  |

###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농가→지역·품목농협·수협) → 손해평가 및 지급보험금 결정(통상 2주) → 보험금 지급(지급보험금 결정후 7일 이내)
  - 단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과수, 밭작물 등)은 가입수량 대비 최종 수확량에 차이를 보상해야 하므로 최종 수확기(수확량 조사) 이후 보험금 지급, 재해피해 농가는 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보험금 선지급 제도〉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공통 적용

\* 보험금 결정전이라도 가입농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 심리상담정보센터소개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무료 해결드립니다.

### 태풍 ‘볼라벤’, ‘덴빈’ 등 재난경험자 심리상담 실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 잠을 편히 잘 수 없어요”

“마을 주민들의 성격이 변했어요, 이곳에 산다는 것이 두렵기만 해요” 태풍이 휩쓸고 간 어촌마을 이장의 하소연이다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초강력 태풍 ‘볼라벤(BOLAVEN)’, ‘덴빈’ 과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재난심리 상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상담대상은 피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 목격자, 현장 수습활동에 참여한 일선 공무원·자원봉사자·소방관 등이다.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사회생활 기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조기에 해소해 줌으로써 PTSD로 진전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난경험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난심리안정지원 제도’를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금년도에는 총 700명(7월말 현재)의 재난경험자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 주요 사례 : ‘10년 연평도 포격·곤파스 태풍, ‘11년 구제역·우면산 산사태, 기타 인적재난(화재·폭발·교통사고 등)

■ 재난심리안정지원원은 전국 17개 시·도별 재난심리지원센터(경기도 2곳)에서 교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1,900여명의 재난심리지원 전문가가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재난심리지원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심리지원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충격 정도가 심한 경우 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심리상담 신청은 재난경험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 개인이 가까운 재난심리지원센터로 전화나 방문, 또는 ‘심리상담정보센터’ (www.dmh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특히, 홈페이지는 본인 스스로 심리상태를 진단하는 자가진단을 실시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극복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보다 많은 재난경험자들이 심리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심리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1 재난심리지원센터란?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의 경험으로 충격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심리지원을 하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 크고 작은 재난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어떤일을 하나요?〉

- ◆ 재난피해자, 가족,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활동 실시
  - 방문, 전화, On-Line을 통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치료, 캠프활동 등 심한 충격 이상의 피해자는 정신보건센터 및 전문치료를 위한 병원 의뢰
- ◆ 재난심리전문가 인력풀(Pool)구성 및 교육·훈련을 통해 심리지원 전문인력 양성
  - 정신과 전문의, 상담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수, 정신보건 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학교상담교사 등 관련 학문 분야 전문가
- ◆ 재난심리지원 기초조사 및 활성화 연구
- ◆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학회 등 네트워크 구축

## ■ 재난심리지원이란?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리적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사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 재난의 정의

유엔재해기구(UNDP)와 유엔발전계획(UNCRD)에서는 재난을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조직과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대규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에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 재난경험자의 정의

재난경험란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책정보**

**■ 대상지역**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이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심리지원활동을 전개한다.

**■ 지원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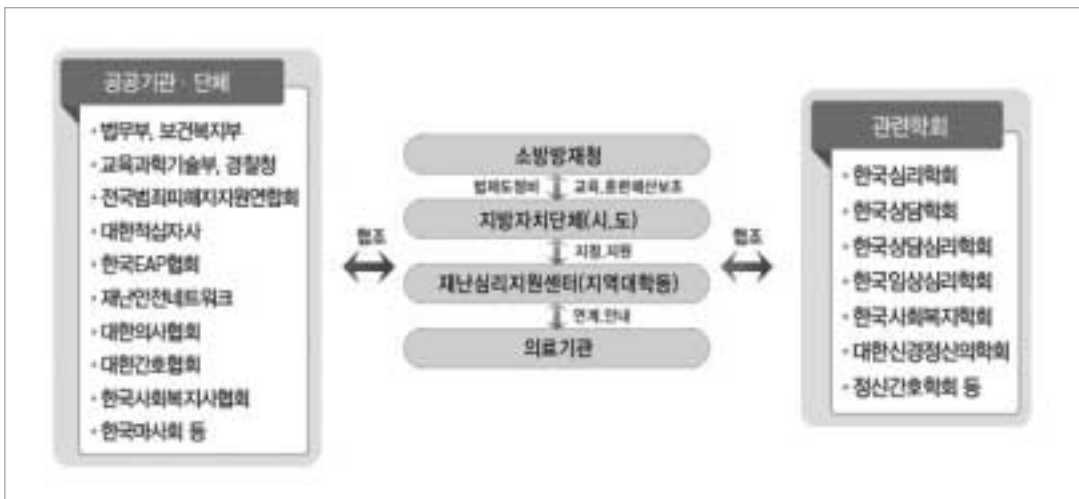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나 직업 전환이 불가피한 경험자로서, 기초 조사에서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가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심리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재난경험자 중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 업무영역**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기존의 보건의로 체계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된다.



**■ 지원체계**



## ■ 기관별 업무분장

### 1. 소방방재청

- 재난심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연구 및 표준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원활동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 2. 지방자치단체(시/도)

-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 관리
-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기타 행정지원
-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 3. 재난심리지원센터(지역대학, 의료기관 등)

- 실질적인 지역 재난심리 활동 총괄 지원(인력 Pool 구성, 지원활동 등)
- 해당지역 재난경험자 심리상황 기초조사 실시
- ※지원센터 지정여부 및 지정대상은 해당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 참고 2 시·도별 재난심리지원센터 현황

| 시·도 | 지정기관                    | 주 소                            | 비 고 |
|-----|-------------------------|--------------------------------|-----|
| 서울  |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6 일양빌딩 별관 7층   |     |
| 부산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br>간호학과      |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동 633-165           |     |
| 대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     |
| 인천  | (사)한국EAP협회 인천희망<br>나눔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7 4층           |     |
| 광주  | (사)한국EAP협회 광주희망<br>나눔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     |
| 대전  |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2-1              |     |
| 울산  |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 10길 25             |     |
| 경기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br>정신건강의학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     |
|     |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     |
| 강원  | 한림대학교심리학과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     |
| 충북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10번지           |     |
| 충남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 충남 천안시 두정동 163-4 노동복지회관 3층     |     |
| 전북  | 예수대학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8-1       |     |
| 전남  | 동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 전남 나주시 건재로 253                 |     |
| 경북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     |
| 경남  | (사)한국EAP협회 경남센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1 평화상가 715   |     |
| 제주  | 제주한라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963-2          |     |